

“優秀食品 指定制度 實施에 즐음하여”



保健社會部 衛生管理官
金 鶴 洛

保健社會部에서는 1970年 11月 11日 優秀食品 規程을 制定·公布·施行함으로써, 許可를 받아 만들어 낸 各種 食品 中 特히, 그 品質이 優秀한 食品을 優秀食品으로 指定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이 그 質을 保障하여 消費者가 마음 놓고 좋은 食品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를 마련하였다.

S.F.란 Superior Food의 略字로서 “優秀食品”이란 뜻인데, 이는 食品을 製造·加工하는 메이커 중에서 그 施設과 品質管理, 標示狀態 等이 特히 優秀하여 다른 食品 보다 衛生의이며 營養의인 것만을 골라, 保健社會部長官이 優秀食品으로 指定한 食品을 말한다.

지난 20餘年間 우리 食品衛生 行政은 既往末期의 舊法에 依한 食品衛生行政 不在의 狀況에서 治安과 관련된 監視行政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62年 1月 20日, 비로소 食品關係 特別法인 食品衛生法의 制定公布를 계기로 食品衛生 行政이 近代 行政 本然의 바탕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指導와 監視를 竝行한 조장行政으로 발돋움 하기 시작한지 어언 10餘年, 食品衛生 行政은 法을 基準으로 行政機構를 補強하고, 施行上의 여러 가지 法令을 整備·制定하여 食品營業 施設을 指導·育成하였으나 消費者的 無關心 속에서 不正·不良食品은 범람하였다.

그러나, 제 1·2차 經濟開發計劃의 効果的 達成으로 因한 國民經濟 成長과 大量生產, 大量 消費時代인 70年代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맛있고 營養의이고 衛生의인 食品을 國民에게 供給할 수 있느냐 하는 社會經濟性 要件의 變遷에 따라, 既히 1969年 8月 4日 大統領閣下의 特別指示에 따른 保健犯罪 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의 制定·公布와 一同하여 當局과 國民이 食品衛生에 큰 關心을 갖기始作하여, 不正食品의 발호를 막는 한편, 좋은 食品 만들기에 當局과 消費者, 메이커가 다 같이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不正食品을 배척하고 優良食品을 利用하



고자 하는 消費者의 여망에 따라, 優良食品中에서도 어떠한 모양의 것이 優秀食品인 가를 소비자에게 正確히 알려 주어서 國民生活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制度로서, 優秀食品指定制度를 實施하게 된 根本趣旨인 것이다.

이와 같은 優秀食品指定制度 實施에 따른 實際 波及 效果를 細分하여 간추려 보면,

첫째, 食品製造業者の 施設改善과 品質保障의 意欲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即,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商行爲로서의 食品에 이커에서는 政府의 品質保障에 따라 자기 製品의 신빙도를 높이기 위하여 優秀食品의 指定을 願할 것이며, 각 메이커에서는 優秀食品으로 指定받을 수 있는 要件을 갖추려고 最善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食品衛生法에 依한 各種 食品製造에 關한 規定보다 越等히 優秀한 施設을 갖추도록 規定한 優秀食品의 製造·包裝施設 基準에 의거, 法令基準을 능가하는 施設을 갖추도록 規制하였으므로 흔히, 製造·生產過程에서 일어날 憂慮가 있는 衛生上 危害, 要因을 豫防할 수 있다는 뜻에서도, 그 製造 施設은 優秀食品 指定과 더불어 自律의 으로 國際水準의 施設로 变모할 것이다.

둘째로, 國際水準의 食品으로 改良된 優秀食品의 不良食品을 驅逐한다.

實驗室에 優秀한 實驗要員을 確保·研究케 하여 製品의 質의 向上내지 研究·開發하는 한편, 食品衛生管理人을 常駐·監督케 하여 製造過程에 直接 參與케 함으로써 나날이 發展하는 開發食品의 優秀性을 보이게 될 것이며, 文字 그대로 衛生의이며 營養의 優秀食品으로서 消費者的 차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째, 사후 管理를 徹底히 하여 流通過程에서의 欠質을 最大한 抑制한다.

原料 및 製品의 保管管理, 運搬, 販賣等, 流通過程에서의 保管等 品質管理를 事前 嚴密히 檢討한 後, 食品의 운반 및 保管에 이상이 있다고 認定한 수 있을 경우에 限하여 優秀Food으로 指定함으로써, 製造者가

流通過程까지 責任자게 하여 消費者에게 傳達될 때까지 品質이 保障되도록 하여, “優秀Food”으로 指定된 後에는 年 2回 以上 指導·監視하여 그 質을 繼續 保障한다.

위에서 優秀Food 指定制度 實施의 意義와 効果를 上述하였거니와, 製造施設·製品管理의 向上으로 優秀Food이 消費者的 차광을 받게 되면, 모든 食品製造 메이커는 自發의 으로 施設을 확장하여 좋은 食品을 만들 어 優秀Food으로 指定 받으려고 할 것이며, 消費者는 優秀Food만을 찾게 되고, 드디어는 不正Food이 自然 陶汰될 수밖에 없는 꿈같은 現實이 우리 눈 앞에 展開될 것이다.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샴法則이 食品衛生에 있어서만은 正反對로 유도되는 時代의 變遷期에 臨할 것이다.

消費者 保護政策이 結實을 뗇어 社會開發에 政策視野를 넓힌 第3次 經濟開發計劃 추진의 밑거름이 되어, 食品工業化에 依한 豐饒한 70年代를 이룰 것을 確信하면서, 이 S.F.制度를 創案한 實務者로 이의 對象이 되는 製造業體에 바라는 바를 略述함으로써, 本稿에 가름하고자 한다.

法에 依據, 許可를 받아 製造하는 食品中, 當部가 食品等 規格基準을 定한 食品이면 어떤 것인 간에 優秀Food의 指定申請을 할 수 있으며, 學界, 言論界, 研究檢定機關, 消費者, 業界를 망라한 당부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嚴正한 審議를 거쳐 適合할 경우 指定하도록 되었으니, 當部가 制定한 同 規定의 제반 要件을 갖추어서 優秀Food의 지정을 받기 마련다.

이와 같이 우수 식품의 지정을 받으려고 함으로써 製造施設, 製品의 開發等이 차츰 向上되어 國際水準施設로 發展할 것이며, 經營의 合理化와 더불어 開拓海外市场에서 우리 食品의 인기는 순수 穎得 100%, 外貨獲得事業의 일익을 차지하면서 國民所得 水準의 上昇 要因의 하나로 食品製造業所가 國家發展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게 클로우즈업 될 것을 期待하는 바이다.